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운영 상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서식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선택 발급 도입(안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의1, 별표4)

- 1) 상벌 사항,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 하던 것을 공무원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등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 교원 신규채용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목록에는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명시함

나. 경력증명서의 발급 청구인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청구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유가족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삭제(안 별지 제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내용(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신체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이”를 “교육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의1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취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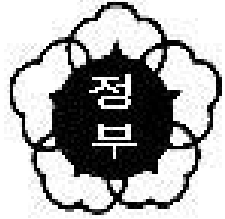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1조제1항 관련)

번호	발령 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별지 제33호서식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발급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급
		신원조사 회보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신원진술서 3통	별지 제34호서식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35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대학교원만 제출 함)
		호봉획정표 1통	별지 제15호서식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 1통	별지 제36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 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2	승진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대학교원만 제출함 대학교원만 제출함
		호봉확정표	1통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	1통	
3	전직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호봉확정표	1통	
4	강임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	1통	
		호봉확정표	1통	
5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정년퇴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진단서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급
9	전출·전입·겸임	전출·전입·겸임 동의서	1통	대학교원만 제출함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10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서	1통	
11	정기승급	정기승급조서	1통	별지 제37호서식
12	전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대학교원만 제출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구 비 서 류	1. 최종학력증명서 ☐ 2. 경력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채용신체검사서 ☐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6. 신원조사 회보서 ☐ 7. 사진(명함판 상반신) ☐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85mm×467mm(백상지 150g/㎡)

(갑-2)

분류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연 금 번 호												
사 진 명함판 (5cm×7cm)		성명 (한글)			성별		주 소		생 활 근 거 지							
		병역관계	해 당 없 음	미 필		복 무										
				신체검사 연월 일	신 체 등 위	병역종류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 대 연 월 일	제 대 연 월 일	주 특 기			
				삭제 → 개인신상 관계	신 체 사 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cm		kg				좌(), 우()										
가 족 관 계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 이하 생략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연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	
------	------	-----------	--

용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재임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취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190mm×268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생략)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u>교육공무원이</u>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u>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u>	② ----- ----- --- <u>교육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u> ---. <u><단서 삭제></u>
<u><신설></u>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의1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취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